

#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992. 9. 29

산업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2. 9. 18

· 회부일자 : 1992. 9. 19

다. 상정일자 : 제 81회 임시회

· 제1차 산업위원회 (1992. 9. 29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 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국장 석 상 태 )

가. 제안이유

○ 자동차 관리법 제정시행 ('91. 12. 31개정, '92. 7. 1부터 시행)

- 자동차 등록 번호표의 탈착허가 업무등이 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부터 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
- 충청북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, 군수에게 기 위임하였던 사무는 내용 변경없이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로 신설 위임하고,

○ 자동차 등록업무 시군위임 확대계획 추진 (92. 3월부터)

- 자동차 등록업무 시군 위임 확대계획 추진과 관련 도지사의 권한 사무중 민원인의 편의 증진 행정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
- 자동차 번호판의 제작·교부 및 교부대행자의 지정과 이륜자동차 관련업무 등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로 신설 위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 .

- 총 위임건수 : 11건
  - 기 위 임 : 5 건 ( 규칙 → 조례 )
  - 신규위임 : 6 건 (조례신설)
  
- 위임 업무
  - 자동차의 등록 : 5 건
  -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: 2 건
  - 이륜 자동차의 관리 : 2 건
  - 자동차 관리 사업 : 2 건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 전문위원 허 회 )

- 충청북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, 군수에게 기위임 되었던 사무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 시행과 함께 (92. 7. 1부터 시행) 그 권한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된바 자동차 등록 번호표의 탈착허가 사무의 4건의 사무를 내용 변경없이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로 신설 위임하고,
  
- 자동차 등록사무의 시군 위임확대 계획 추진에 따른 등록 번호표의 제작 교부 및 봉인사무의 5건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입증대 및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로 신설 위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
5. 토론 요지 : " 없 음 "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" 없 음 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 없 음 "

9. 심사보고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 (안) 1 부

나. 신구조문 대비표 1 부